

#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 동향과 전망(I)

## 제자 내용

1. 머리말
2. UR 농산물 협상과 현황
3. 최근의 농산물 협상 동향과 전망
4. UR협상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5. 맺는말

최 염 순  
농림수산부 축정과

## 1. 머리말

가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多者間貿易協商)은 1990년 12월까지 협상기한을 두고, 1986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얹혀 아직 가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한 분야인 농산물 협상은 1990년 7월 농산물그룹 드쥬(De Zeeuw)의장의 합의초안이 제시된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 주요협상국인 미국·유럽공동체(EC) 그리고 다른 수입국들간의 입장대립이 너무 커 작년 12월 브رات셀 각료회의시 부득이 협상기한을 금년으로 연장해, 중단되었던 협상을 금년 2월에 재개하여 진행되었으나 협상국간의 의

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는 1989년에 국제수지여건의 개선과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입을 제한해 올 수 있었던 근거조항으로서 가트 18조 B항의 졸업으로 인하여(표1)에서 보듯이 잔존 수입제한 축산물은 1997년까지 모두 수입자유화계획을 예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UR농산물협상과 맞물려 우리 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입개방이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어서 양축농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호주 등 축산물 수출국으로부터 극심한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축산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 농림수산물의 잔존수입제한 품목수

구 分	총 계	수입자유화품목수		계	잔존수입제한품목수 ('91. 8)				'95이후 유보품목	
		89이전 자유화	89~91 자유화		'92~'94자유화예시					
		'92	'93		'94					
농림수산물	1,790	1,387	1,130	257	403	131	43	44	44	272
수출입 통 합	1,637 153	1,364 23	1,130 —	234 23	273 130	131 —	43 —	44 —	44 —	142 130
축 산 물	300	209	176	33	91	29	10	10	9	62
수출입 통 합	286 14	208 1	176 —	32 1	78 13	29 1	10 —	10 —	9 —	49 13

○ '91년도 농림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수출입공고 제한품목기준) : 84.7%

— 품목내역별('91) : 농산물 90.6%, 축산물 74.0%, 임산물 97.5%, 수산물 68.7%

이 농산물협상에서는 수출국이 의도하는대로 궁극적으로 교역자유화뿐 아니라 세계농업 개혁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어 무역왜곡을 빚고 있는 대부분의 자국내 농업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감축하고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수입수량, 규격제한 및 동식물검역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까지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경영규모가 대체로 영세한 우리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자못 클 것이다.

양축농민은 이 때문에 농산물협상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믿어 여기에서는 축산분야와 연관시켜 『최근의 UR농산물 협상동향과 전망』에 관해 양축농민의 이해를 돋고, 특히 농산물협상이 갖는 우리의 문제인식을 정확히 하여 앞으로 협상타결에 대비하려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 2. UR농산물 협상 현황

### 가. 가트(GATT) 개요

가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이라고 하는 국제 협약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와같은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반성 아래 전쟁

의 원인이 되는 시장확보나 식민지 쟁탈 등 보호주의를 완화하고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국제무역체제와 세계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세계자원의 합리적인 활용과 완전고용, 그리고 인류의 복지증진 등을 이룩해 나가고자 미국·영국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23개국이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 모여 이 협정서에 서명하고, 그 다음해인 1948년 1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가트회원국은 모두 129개국(정회원국 101개국, 잠정회원국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1967년 4월 14일에 가입하였다.

가트는 설립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체 4장 38조의 협정문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이 협정문에 규범화하고 있다.

첫째, 가트 회원국은 어느 한 회원국에 대하여 무역상의 우대원칙을 취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우대조치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최혜국(最惠國) 대우원칙

둘째, 수입상품에 대하여 조세와 규제 등의 면에서 국내상품과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내국민 대우원칙

셋째,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관세만을 부과하되 그 관세도 협상을 통하여 점진

적으로 인하해 나가며 가트에 약속한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양허세율 준수의 원칙

넷째, 관세 이외의 수입쿼터 등 수입을 규제하는 비관세장벽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비관세장벽 설정의 억제 원칙

다섯째, 모든 무역분쟁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특히 관세협상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서로간에 관세를 인하한다는 협의원칙과 상호주의 원칙

여섯째, 가트회원국은 위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는 약간의 예외, 다시 말해서 특혜관세부과 등을 인정한다는 개도국 우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 나. UR협상의 배경

세계경제는 전후(戰後) 가트체제의 출범에 따라 자유무역주의의 표방 아래 가트회원국간의 무차별 최혜국 대우의 실현과 관세인하, 또한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급속한 세계교역의 신장을 거듭하여 자유무역체제가 유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세계경제가 성장둔화로 매우 어렵게 되면서 교역질서는 지역주의나 쌍무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가트규범을 이탈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남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세계각국들이 가트의 자유무역이 자국에 유리할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불리할 때에는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이른바 신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다자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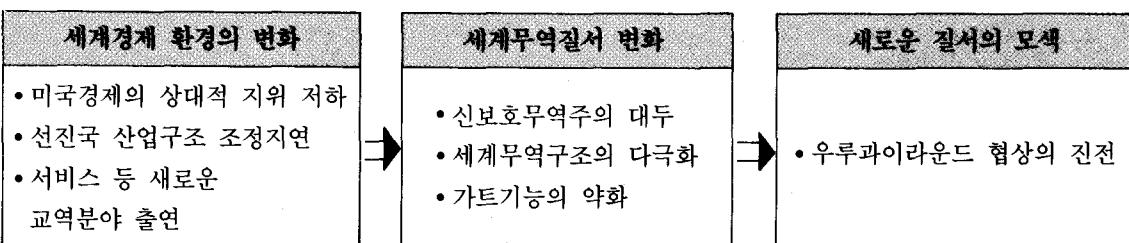
체제인 W 가트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세계무역은 크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같은 세계무역의 불균형은 가트체제아래 미국이 중심되어 이끌어 오던 자유무역질서가 1980년대 미국경제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밀·옥수수 등 곡물중심의 농산물 무역량도 절반수준으로 격감한데서 비롯된 곡물가격 하락에 의한 농업 불황을 겪게 되어 제기능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농산물교역 부진 요인은 1970년대 초반의 세계식량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각국들이 농업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여 식량증산정책을 앞다투어 추진한 결과, 이 시기에 농산물 공급과잉 문제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유럽공동체가 그들의 공동농업정책(CAP)에 의하여 높은 농산물가격지지정책, 기술개발보급 및 시설현대화에 힘입어 식량자급을 이루고 더욱이 수입과징금제도와 수출보조금 제도와 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강력한 무역장벽을 구축하여 수입국이던 것이 오히려 이들 국가가 잉여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공동체의 과도한 수출보조금제도는 오늘날 농산물의 무역을 왜곡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뿐아니라 미국 등과의 지나친 수출경쟁으로까지 발전되어 끊임없는 통상마찰을 빚게 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이와같은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하던 위상도 약화되고, 반면 일본·아시아 신흥공업국과 동구경제권(東歐經濟圈) 등 세계경제가 다극화로 치달아 세계무역구조가

####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추이]



동시에 복잡하고도 고도화되고 또한 서비스·지적 소유권 등 새로운 교역분야가 나타났으나 가트 규범에는 이를 통제할만한 규제내용이 없어 계속 통상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가트의 일반규범에서 예외로 취급되어온 농업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가트의 자유무역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푸타 델 에스테에서 각료선언을 통해 UR협상이 시작되었다.

#### 다. UR협상의 목표와 의제

UR협상의 목표는 이 협상이 시작되게 된 배경 속에 찾아볼 수 있듯이 기존 가트 기본정신에 따라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공정하고도 시장지향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있다. 따라서 UR협상은 과거의 협상과는 달리 단순히 관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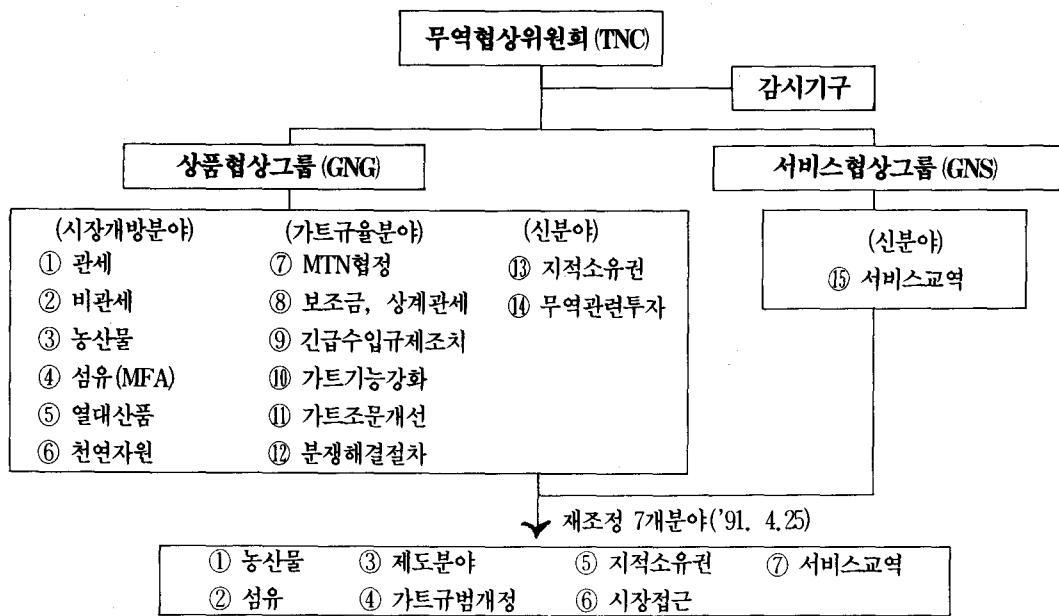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낮추자는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협상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모든 교역상품의 관세를 내림과 동시에 각종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대폭 낮추는 한편 농산물·섬유·천연자원 등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온 품목들에 대한 시장개방을 크게 넓혀 나가고.

둘째, 상품교역 이외에도 금융·통신 등 서비스 분야와 지적소유권 보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만들고,

셋째, 국제적 약속으로 만들어낸 가트 협약이 당초 약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규율을 강화해 나가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UR협상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다음(그림 1)에서 보듯이 상품교역에 관한 14개 의제와 서비스 교역 등 모두 15개 분야로 협상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 협상 그룹은 크게 시장개방분야·가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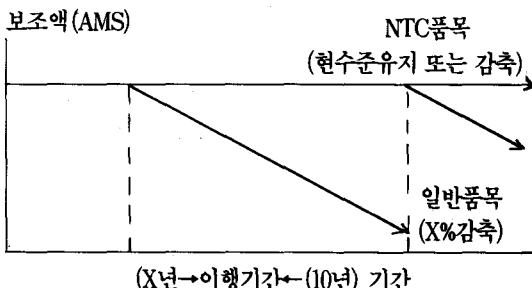


(그림1) UR협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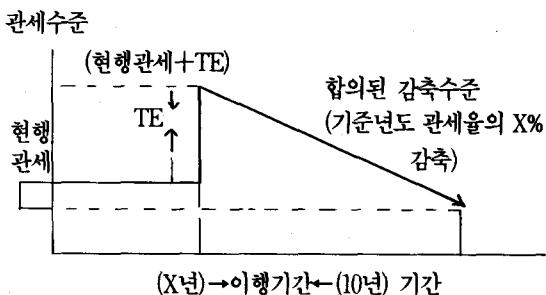
율분야·신분야로 나뉘고, 이외는 별도로 서비스 교역분야가 있다.

최근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덴겔(Dunkel) 가트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 4월 25일 무역 협상위원회(TNC)에서 당초 15개 협상분야중에서 이미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제외시키고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7개분야로 재조정하였다.

UR협상에 있어 우리 양축농민의 관심사항은 무엇보다도 농산물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협상분야는 이미 자세히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접근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의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수입규제 및 세계농업구조의 일대 개혁을 통해 경쟁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유무역체제로 발전시켜 가는데 촛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 협상의 의제는 ①국내보조 ②국경보호(시장개방·시장접근) ③수출보조 등을 그 요



(그림2) 국내보조금 감축예시



$$\text{※ 관세상당치} = (\text{국내가격} - \text{국제가격}) / \text{국제가격} \times 100$$

(그림3) 관세상당치(TE) 감축예시

소로 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농산물협상의 주요의제와 쟁점

구 분	내 용	협 상 쟁 점
국내보조 (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소득 및 농산물 가격지지를 포함한 무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지원에 관한 가트규정 강화와 정부의 모든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상당수준 감축</li> </ul> <p>※ 감축방법(예시) : (그림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축대상과 허용대상 정책사업 분류</li> <li>감축대상정책의 감축 목표 및 이행 기간</li> <li>감축이행방법 등</li> </ul>
국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개방(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제한품목은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TE)로 전환후 점진적으로 감축</li> </ul> </li> </ul> <p>※ 감축방법(예시) : (그림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관세인하 및 양허확대</li> <li>- 시장접근(TQ)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이 되고 있는 품목은 시장접근(수입쿼타) 보장</li> <li>- 수입이 없는 품목도 국내 소비량의 최소한 일정비율(X%) 수입쿼타 부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화 대상품목 범위 조건 등</li> <li>- 관세상당치 감축목표 및 기간</li> <li>- 최초 수입쿼타 설정량 및 중량목표</li> <li>- 관세인하 및 양허확대 목표</li> <li>- 관세협상방식</li> <li>- 가트 11조 2항(C)에 의한 수입제한 개선유지 또는 철폐여부</li> </ul>
수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보조금 : 수출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기타 보조와 수출지원 정책의 감축·철폐</li> <li>수출규제 : 수출 제한 및 금지에 관한 가트 규정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대상 수출보조금의 유형</li> <li>수출보조의 감축목표와 이행기간</li> </ul>